

5.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219호 2000. 1. 28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산정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기준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현실화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 따라 조성원가 산정금액의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던 공급가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시행일 :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2000. 2. 28)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

한다)를 말한다.

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학교용지의 조성·개발등에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을 “학교용지를 개

3.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

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

을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미만의 개발사업으로서 지역의 협소로 인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중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소요된 원가(이하 이 조에서 ”조성원가“라 한다)로 산정하되, 초등학교용 학교용지의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이익의 범위안에서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할 수 있다”를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시·도지사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이주용 택지로 분양받은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공동주택(임대주택을 제외한다)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공고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

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1000분의 8

2.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 1000분의 15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시·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후 1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②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①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당해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접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업무와 교육감의 의견 표시에 관한 업무를 시·군·구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과태료)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개발사업시행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

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과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내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분부터 적용한다.